

## I. 머리말

언론이나 보도를 억제하는 근거로 지금까지 우리의 권력자들이 흔히 이용해 온 명분으로 「국익」이라는 것이 있다. 과거 공화당정권이나 5공할 것 없이 역대정권이 언론이나 보도를 억제할 때면 그 가장 편리한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국익이란 것이었다. 그럼 과연 국익이란 정부나 권력이 언론을 억제하는 근거로 것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권력자들에 의해 언론을 억제하는 무기로 이용되어온 것이지만 과연 국익이란 것이 언론을 꿈쩍 못하게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가.

사실 국익이란 것을 어떤 불가침의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언제라도 언론을 억제할 수 있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 요즘은 언론이나 보도활동에 대한 억제나 간섭이 훨씬 덜해져서 국익이란 말을 듣는 일도 그만큼 드물어졌지만 앞으로 언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기라도 한다면 권력자나 관료들의 입에서 다시 국익이란 말이 오르내리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국익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누가 그것을 정하고 또 국익이란 명분만 있으면 언론이나 보도활동에 대한 어떠한 억제도 당연히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들을 한번 철저히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II. 국익의 개념

국익이란 단적으로 말해서 「국가적 이익」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지극히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더욱이 그것은 불가침이거나 절대적일 수 없는 개념이라는 데 논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통계적인 개념이다. 국가적 이익이란 결국 「국가가 추구하는 이익」이라고 정의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이익은 나라에 따라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익이란 개념도 통계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적 이익이란 개념은 본래 16, 7 세기에 걸쳐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근대민족국가가 형성되면서 관심의대상이 되기 시작했으며 왕의 의사나 왕실의 이익, 왕조의 이익 같은 명분이 더 이상 힘을 가질 수 없게 되자 그에 대체되는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독립 이후 정치가들이 주로 그 말을

즐거 사용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가적 이익이란 그런 점에서 비교적 근대적인 개념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자국의 이익을 지킨다는 뜻으로 주로 대외적이고 외교적인 용어로 사용되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익이 상대적인 개념이라는데 관해서 레이몽 아름은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적 이익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개개 국가의 이익은 저마다의 조건과 맥락속에서 개별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고 국가내부에 있어서도 국가이익의 내용에 관해 일반적인 합의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적 이익이란 영어로 national interests 이지만 national 이란 말이 「국가적」이란 뜻과 함께 「국민적」이란 뜻도 지니고 있으므로 national interests 란 「국가적 이익」도 되지만 「국민적 이익」이 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 이익과 국민적 이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많은 경우에 다른 가치체계나 이익을 추구하는 국내의 여러 계층이나 이익집단, 정파 등이 국익에 관해서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상충하는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로즈노도 어떤 정책이나 행동이 국가를 위해 가장 이익이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치체계가 다른 여러 집단에 따라 의견이나 주장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저마다의 입장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령 북한과의 연방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국익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이슈일 경우에 그에 관해서는 정부나 여야의 각 정당 사이에서 또 각종재야조직이나 재향군인회, 노조등과 같은 사회단체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의견이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기관들도 정부나 각 정당과는 다른 주장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국익에 대한 판단이 이익과 입장이 다른 많은, 다양한 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물론 정부는 국정의 담당자로서 그가 내세운 정책이 가장 국익에 어울리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지만 무엇이 진정 국익인가 하는 것은 정부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로즈노는 국가란 갖가지 상충하는 이익을 가진 수많은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도 그렇게 일방적으로는 결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무엇이 국익인가에 관해 애써 통일적인 의견을 얻고자 한다면 충분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 모든 관계집단으로 하여금 저마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여 그것들을 조절함으로써 하나의 콘센서스를 이루게 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다. J. 프랑켈은 「국익이란 이기적과 이타적, 단기적 관심과 장기적 관심, 적극론과 소극론, 전통과 혁신,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양극사이에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바람직한 국익이 무엇인가는 그 모든 경우에 이분법에 의하지 않고 양극간에 산재하는 점들 중에서 경험적인 지표에 따라 어떤 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결국 무엇이 국익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갖가지 상충하는 의견을 조절함으로써 얻어진 타협의 산물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로즈노도 국가에는 많은 이익 집단이 존재하며 국가를 위해서 가장 이익이 되는 대외정책이나 행동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도 수많은 대립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익이란 결국 객관적 상황이 아니라 선택의 산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이 국가이익인가 하는 것은 가치판단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화될 수 없는 개념이며 객관적인 기준으로 측정하거나 분석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다. 국익이란 결국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III. 보도억제수단으로서의 국익

국익이란 것처럼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이고 이익」이란 뜻 외에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상대적인 개념인데도 우리의 많은 권력들은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내세워 언론이나 보도활동을 억제할 때는 그것을 가장 유력한 명분으로 이용해왔다. 그런 명분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언론을 억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들이 국익이란 명분을 즐겨 내세우는 것은 그것을 불가침의 절대적인 개념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과거 우리 권력자들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예사로 보도관제를 실시하여 언론을 억제해 왔다. 특히, 김대중 씨 사건이나 박동선 사건처럼 외국에서 큰 사건을 일으켜 국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때면 으레 국내보도를 억제하여 국민에게 그것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왔다. 김대중 씨 사건 때는 김대중 씨가 동경에서 납치된 뒤 그것이 전세계적으로 큰 뉴스거리가 되었는데도 국내의 신문과 방송은 당국의 엄격한 보도관제로 여러 주에 걸쳐 사건을 전혀 국민에게 알리지 못하고 있어야만 했다. 또 1978년에 워싱턴에서 박동선이라는 한국인로비스트가 미국회의원들을 금전으로 매수하려 했다고 해서 이른바 코리아 게이트로 전세계에 걸쳐 보도된 박동선 사건도 우리나라에서만 2개월 이상이나 신문이나 방송에서 단 한마디도 보도되지 않아 한국인이 직접 관계된 사건인데도 전세계가 알고 있는 것을 한국민들만이 이처럼 오랫동안 전혀 모르고 지내야 하는 경험을 치루어야만 했다. 그런 사건들은 국제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엄청난 실책을 저질러 국가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것이었는데 당국자들은 그런 사건들을 우리국민에게는 알리지 않으려고 이처럼 장기간 보도관제를 실시한 것이었다. 그러한 보도관제를 실시할 때면 으레 내세운 것이 역시 국익이란 것이었는데 그런 사건을 보도하게 되면 국익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사건들을 보도하지 못하게 해서 국민에게 그것을 알리지 않고 음폐하려고 한 것은 국민에게 알리게 되면 정권이나 집권당이나 관계된 관료들이 국민에게서 비판을 받고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염려한 때문이었다. 그렇게 보면 보도를 억제하면서 내세운 「국익」이라는 것이 실은 국가나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정권이나 일당의 이익 또는 관료들의 이익이었음이 분명했다. 실제로 우리 권력자들이 지금까지 결핍하면 내세우는 국익이란 것이 실은 국가적

이익이 아니라 정당의 이익, 정권의 이익, 권력자의 이익이었음은 늘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일이었다.

1987년의 6·29 노태우 선언이 있는 뒤인 동년 9 월에는 김대중 씨 사건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이후락 씨가 김대중 씨 사건에 관해 증언한 내용을 실었다고 해서 「신동아」와 「월간조선」의 발행을 1 주일 이상이나 정지시킨 사건이 있었다. 이 때도, 정부당국자는 두 잡지의 발행정지를 명한 이유로 「국익」을 들었다. 당국자는 이후락 씨의 증언이 외교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으로서 국익에 유해하다고 지적하고 외교상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국익상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로 두 잡지의 발행을 정지시킨 것이 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는 이후락 증언의 내용을 그대로 둔 채 두 잡지에 대해 1 주일 남짓 만에 발행정지처분을 철회했기 때문에 두 잡지에 대한 발행정지 이유가 국익보호에 있었다는 설명도 아주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다. 발행을 앞두고 인쇄중인 간행물의 내용을 미리 검토해서 발행을 중지시킨 것은 명백히 언론통제의 가장 원초적인 수단이라고 할 사전억제로서의 검열에 해당하는 것인데 김대중 씨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세운 「국익」이라는 것이 사전억제로서의 언론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할 수 없음은 논의의 여지도 없는 것이다. 김대중 씨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잘못이 있었다면 언론은 그것을 보도하고 비판할 자유가 있으며 또 국민은 그것을 알권리가 있는 것이다. 「국익」과 같이 막연하고 추상적 이 고 상대적일 수 밖에 없는 그런 개념이 헌법이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명분으로 함부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 IV.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도의 자유

정부나 관료들이 국익을 이유로 해서 언론기관의 보도를 억제하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물론 아니고 미국을 비롯하여 외국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온 것이다. 외국의 경우 국익과 관련한 보도에 있어서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이 외교나 안보등과 관련해서 비밀로 지정된 정보를 입수해서 공개 보도하는 경우이다. 그러한 예로서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도의 자유가 가장 예리한 대립을 보인 대표적인 사건이 1971 년 미국에서 있었던 이른바 국방성(펜타곤)비밀문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미국방성이 작성해서 극비문서로 지정한 월남전에 관한 비밀보고서를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유수의 신문들이 은밀히 입수해서 보도, 공개한 데서 벌어진 것이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국방성은 정부가 공식으로 극비문서로 지정한 비밀문서를 신문들이 공개한 것은 분명히 국익에 해로운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맨 처음 그 비밀문서를 공개한 뉴욕타임즈는 오히려 그 비밀문서를 공개해서 국민에게 알릴 것은 알리는 것이 국익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즈는 그 비밀문서를 공개함에 앞서 그 내용을 철저히 검토한 뒤

3개월간에 걸친 작업으로 비밀이라고 지정되었어도 실질적으로 비밀이라고 할 수 없는 기록들 중에서 공개할 만한 것들만을 추려서 1971년 6월 13일부터 연재로 보도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정부에서는 뉴욕타임즈의 연재가 시작되자 비밀로 지정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한 방첩법을 근거로 국방성비밀문서의 공개가 「국가의 이익과 안전에 대해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법원에 대해 신문기사의 게재중지를 요구하는 유지명령의 신청을 제기했다. 그에 대해 법원에서는 그 기사의 일시적인 게재중지는 인정했으나 항구적인 게재중지를 요구한 정부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미국헌법개정 제 1 조는 국민이 그들의 정부와 그 행동에 관해 자유로이 정보를 얻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설사 그런 정보가 정부에 불리한 것일지라도 신문은 그러한 정보를 보도해서 국민에게 알릴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했다.

뉴욕타임즈는 다시 그 사건을 연방대법원에 제기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하에 있어서 보도기관의 기본적인 책임은 국민이 스스로 선임한 정부의 기능과 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으므로 타임즈는 국민에게 알릴 것을 알리는 것이 국익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또 타임즈는 문제된 문서의 공개로 행여 또 한 사람의 미군병사의 생명이 위협에 처해지거나 미국의 안전이나 세계의 평화가 조금이라도 위협을 받는다면 그 공개의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임즈는 문제의 비밀문서속에 있는 기록은 대부분 역사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부에 의한 비밀지정의 기준이 지극히 막연하고 애매하여 정부가 비밀이라고 지정했다고 해도 실질적인 의미의 비밀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못 된다고 지적하고 정부관료들이 비밀지정권을 멋대로 남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그 사건을 심리한 결과 6대 3으로 뉴욕타임즈 등 신문의 주장을 인정하여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 판결은 무엇이 국익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정부만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함으로써 정부의 국익우선론에 대해 신문에 의한 보도의 자유에 승리를 안겨준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그 판결은 보도의 자유와 국익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의 비밀주의, 비밀지정권의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을 제시한 점에서 크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판결은 국민에게 알릴 것을 알리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며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분명 「국익」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외교나 국방, 안보와 관련된 국가의 기밀은 물론 언론기관이라도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권력자나 관료들이 비밀지정권을 남용해서 그들의 실책이나 부정, 비리 등 실질적으로 국가의 비밀일 수 없는 것까지도 멋대로 비밀로 지정해서 국익을 내세워 그것을 지키도록 요구하는데 있다.

국방성비밀문서 사건에서도 뉴욕타임즈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는 정부의 비밀지정권남용의 실태를 조사하도록 요구하여 그 결과 정부가 국가비밀보호라는 명분 아래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많은 정보를 국민이 모르게 비밀로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1971년 현재 미국방성이 보유하고 있는 각급의 비밀로 지정된 문서들이 모두 합쳐 2천만 건이 넘고 국방성 내에서 비밀문서를 취급할 자격을 가진 공무원만도 「비밀」 담당자 7백명을 포함하여 5만명이나 되었다는 것이다. 비밀지정의 절차가 아주 간단하고 용이한 때문에 국방성의 극비문서 중에는 신문을 오린 조각까지도 들어있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국방성비밀문서 사건에서 뉴욕타임즈 등 신문은 비록 정부에서 비밀문서라고 지정한 것이라도 이미 역사에 속하는 기록과 같이 실질적으로 비밀이라고 할 수 없는 문서나 정보는 비밀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인데 연방대법원이 그 주장을 정식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정부가 이미 비밀로 지정한 것이라도 실질적으로 비밀이 아닌 것은 보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게 된 것이다.

또 그 사건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안보란 말은 광범위 하고 막연한 뜻을 지니고 있어 그 윤곽만으로 헌법개정 제 1 조에 규정되어있는(언론 · 출판의 자유의) 기본적인 법리를 물리치게 하는데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제대로 알림을 받은 대의제를 희생해서까지 군사 · 외교상의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한 참된 안전보장이 되지 못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국민에게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참된 안보와 국익에 이바지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V. 국익과 전쟁보도

보도와 기밀유지의 문제는 특히 전쟁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지난번의 중동의 걸프전쟁 때도 다국적군 당국에 의한 엄격한 보도관제와 검열이 문제로 논의된 바 있다. 다국적군은 전투취재의 풀 제와 정예기자회견, 검열을 통해 보도관제와 정보조작을 실시했는데 전쟁에서의 보도의 제한은 작전의 성공을 보장하고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나친 보도의 통제는 국민에게 알릴 것을 알리지 못하는 결과 국민을 오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국적군에 참가한 영국군의 경우는 보도관제를 위해 영국방성에서 미리 세밀한 보도지침을 작성해서 보도기관에게 배포했는데 BBC는 그와는 별도로 전쟁보도를 위한 자율규제규정이라고 할 자체의 보도지침을 발표하고 각 부대의 위치나 장비 등에 관한 공표는 국방성의 보도지침에 따라 삼가할 것이나 그 밖의 상황에 관해서는 「보도할 것인지 여부를 국방성이 아니라 BBC 자체의 결정에 따라 정할 것」 이라고 선언했다. 또 영국저널리스트조합도 국방성과 BBC의 보도지침과 상관없이 전쟁에 관한 「진실의 음폐나 검열과 싸우기 위한」 조합측의 행동강령으로서의 전쟁보도원칙을 따로 작성해서 발표했다. BBC나 저널리스트조합에 의한 별도의 자주적인 보도지침의 제정은 전쟁보도에 있어서도

보도기관이 최대한으로 자주 ·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군당국에 의한 비밀의 장벽을 뚫고 전쟁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진정 국익에 이바지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영국의 저널리스트들은 지적하고 있다.

## VI. 맺음말

우리나라에서의 비밀지정의 실태가 어떠한지는 적절한 자료가 없어 분명히는 알 수 없으나 짐작만으로도 과다할 정도로 많은 정보가 비밀로 지정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 중에는 외교나 안보에 관한 것처럼 되어있지만 관료들의 실책이나 불법, 비리 등을 음폐하기 위해 비밀지정이 이용된 사항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의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도 비밀지정권의 남용을 막고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언론이 미국의 경우처럼 비록 형식적으로 비밀로 지정된 것일지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비밀인지 아닌지를 자주적으로 판단할 권리를 요구하게 될 가능성도 반드시 배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국익인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언론의 자주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1987년까지 문화공보부에는 신문이나 방송이 지켜야 할 「보도지침」이라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 「협조요청」이란 명목으로 언론기관에게 어떤 뉴스는 신고 어떤 뉴스는 신지말라고 사전에 지시하는 것을 전담해 온 기관으로 홍보정책실이라는 것이 있었다. 홍보정책실 말고도 언론기관의 보도에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기관은 그 밖의 여러 기관에도 있었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보도의 억제를 위한 「협조요청」이란 실은 어김없이 언론에 대한 사전억제로서의 검열이었다. 정부기관이 뉴스의 내용을 미리 알고 그것을 보도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것이 검열인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한 보도억제를 위한 「협조요청」의 명목으로 정부기관이 늘 내세운 것이 국익의 보호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 기관이 국익을 내세워 보도를 억제하도록 요구한 뉴스 중에는 김대중 씨 납치사건이나 박동선 사건 등과 같이 한국정부기관이나 관리들이 관련된 국제적인 스캔들이나 실책, 불법 등에 관한 것들이 수없이 끼여 있었다. 그러한 사건들에 관한 뉴스의 보도를 억제하도록 요구하면서 정부관리들은 무례히 그것이 국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런 사건들에 관해서 우리는 일단 저질러진 사건인 이상 오히려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서 국민의 참된 이해를 구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국익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었을까도 생각한다. 정권이나 개인의 이익이 국가이익으로 가장되고 「국익」이라는 것이 언론에 의한 보도를 억제하는 구실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국가이익이며 무엇을 보도해야 할 것인가는 언론이 자주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미국의 권위지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기준 및 윤리」의 「국가이익」에 관한 다음과 같은 규정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워싱턴 포스트는 국가이익과 지역사회의 이익에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는 국가이익이나 지역사회의 이익이 그들에 관한 정보의 최대한 광범위한 전파로서 가장 잘 보장될 수 있다고 믿는다. 연방공무원이 국가이익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국가이익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문학과(문학박사)

□ 저술: 「비교신문학」 (공저), 「매스컴유통법 제이론」, 「현대신문·방송보도론」, 「언론법제신론」

□ 현재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